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37-165~166호

사 건 명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809개정011, 200807개정004

피 심 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7-10
대표이사

주 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득 시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및 동의 절차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포털, 이메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의 2008년 6월말 기준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명이며, 2007년 말 기준 총 매출액은 약 원이다.

< 연도별 서비스 가입자 수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말
다음	가입자(ID) 수			
	매 출 액			

※ 가입자 수는 중복 계상될 수 있음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피심인은 2008년 9월 1일 현재 나무커뮤니케이션, 다음서비스, 콘텐츠플러그, 트윈클리틀스타, 다음글로벌홀딩스 등 5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심인 업무절차 및 이용약관 규정 등

(1) 서비스 가입

피심인의 서비스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인증절차(본인인증, 전화번호 인증 등) 등을 거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피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다.

(2) 서비스 해지

피심인의 서비스 해지는 이용자가 직접 온라인상 해지신청을 하고 피심인이 해지 처리 절차에 따라 회원등록을 말소하며, 카페 운영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지위를 타인에 양도한 후 해지가 가능하다.

피심인은 해지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수사협조 등의 목적으로 해지 후 1년간 보유하며, 보유기간 경과후 가입 시 아이디(ID)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고 있다.

2. 행위사실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피심인은 2008년 6월 ~ 8월 중 포털 Daum의 금융 및 재테크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카드상품(○○카드, ○○카드 등) 소개 및 상담을 위해 회원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함에 있어

○○시스템(주), (주)○○○존 등 2개 위탁업체에게 이용자 고지 없이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금융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시 Daum 금융플라자의 증권, 보험, 카드, 대출, 펀드/예적금 등 금융 및 재테크 관련 정보 제공과 상품 안내(이메일, DM, TM 등의 방법)를 위해 고객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업체명을 별도로 고지하여 동의받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07. 1. 26일자 개정後)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 관련

피심인이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피심인의 2007년 6월 ~ 2008년 8월말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총 건)에 대한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 피심인은 07. 6. 28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법정대리인과 만 14세 미만 아동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거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한 경우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입자 총 건을 확인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의 메일서비스는 2008년 7월 22일 기능 개선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메일서비스 이용자간 메일목록이 뒤바뀌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메일서비스 이용 장애에 따라 타인의 이메일 목록 노출(최대 개 메일 계정), 타인의 첨부파일 다운로드(최대 명), 타인의 이메일 본문 열람(최대 명), 메일 삭제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피심인이 2008년 6월 ~ 8월 기간 중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고객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미고지 위탁업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 ⑤ (생략)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 관련

피심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주민번호가 동일하거나 미성년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한 경우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행위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접근통제)

① ~ ⑤ 생략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4. 시정조치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한 행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1조, 제28조 및 제76조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별로 각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6의2 ~ 8. (생략)

8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 10의2. (생략)

11. 제31조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1의2. (이하 생략)

나. 정보통신망법상 시정명령

아울러,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

- o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시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및 동의 취득 방법을 개선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에 의거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11. 1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이	경	자	(인)
	위 원	이	병	기	(인)
	위 원	형	태	근	(인)